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 . . (제 회)	

졸업예정자의 경제적 조기 자립
지원을 위한 9개 법령의
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

제출자	국무총리 한덕수 (행정안전부 등 5개 소관)
제출 연월일	20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졸업예정자의 경제적 조기 자립 지원을 위한 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청년의 경제적 조기 자립을 통한 경제활동 촉진을 지원하기 위하여, 자격 기준 및 인력 기준 등에 「고등교육법」에 따른 대학 등의 졸업자로 한정되어 있는 학력요건을 졸업예정자까지 확대하는 내용으로 「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」 등 9개 대통령령을 개정하려는 것임.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 : 1) 법령별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4. . . ~ . 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졸업예정자의 경제적 조기 자립 지원을 위한 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

제1조(「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」의 개정)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2조제1항제1호라목 및 같은 항 제2호나목 중 “졸업한”을 각각 “졸업했거나 졸업 예정인”으로 한다.

제2조(「낙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」의 개정) 낙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5의2 제2호나목 중 “졸업한”을 “졸업했거나 졸업 예정인”으로 한다.

제3조(「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」의 개정)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2 농작물 재해보험란 제7호, 같은 표의 임산물 재해보험란 제7호, 같은 표의 가축 재해보험란 제7호 및 같은 표의 양식 수산물 재해보험란 제7호 중 “졸업한”을 각각 “졸업했거나 졸업 예정인”으로 한다.

제4조(「먹는물관리법 시행령」의 개정)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1호나목 및 같은 조 제2호나목 중 “졸업한 사람이거나”를 각각

“졸업했거나 졸업 예정인 사람 또는”으로 한다.

제5조(「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」의 개정)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2 제1호나목4) 중 “학교 졸업자”를 “학교를 졸업했거나 졸업 예정인 사람”으로 한다.

제6조(「수도법 시행령」의 개정) 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1의3 표의 제1호나목 중 “졸업한”을 “졸업했거나 졸업 예정인”으로 한다.

제7조(「아동복지법 시행령」의 개정)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13 제3호나목 중 “졸업한”을 “졸업했거나 졸업 예정인”으로 한다.

별표 15 표의 임상심리 상담원란 제1호 중 “졸업한”을 “졸업했거나 졸업 예정인”으로 한다.

제8조(「풍수해·지진재해보험법 시행령」의 개정) 풍수해·지진재해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제1항제4호 중 “졸업하였거나”를 “졸업(졸업 예정인 경우를 포함한다)했거나”로, “것(”을 “것[”으로, “졸업자”를 “졸업자(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)”로, “포함한다)”를 “포함한다]”로 한다.

제9조(「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의 개정) 해양

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3조제2항제2호 중 “졸업한 자”를 “졸업한 자(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)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22조(국민건강영양조사원 및 영양지도원) ① 질병관리청장은 국민건강영양조사를 담당하는 사람(이하 “국민건강영양조사원”이라 한다)으로 건강조사원 및 영양조사원을 두어야 한다. 이 경우 건강조사원 및 영양조사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.	제22조(국민건강영양조사원 및 영양지도원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1. 건강조사원: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. ~ 다. (생략) 라.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보건의료 관련 학과 또는 학부를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	1. ----- ----- 가. ~ 다. (현행과 같음) 라. ----- ----- 졸업 ----- -----
2. 영양조사원: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. (생략) 나.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	2. ----- ----- 가. (현행과 같음) 나. -----

다른 학교에서 식품영양 관련 학과 또는 학부를 <u>졸 업한</u>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 고 인정되는 사람 ② ~ ④ (생 략)	----- ----- <u>졸</u> <u>업했거나 졸업 예정인</u> --- ----- ----- ② ~ ④ (현행과 같음)
---	--

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6조(품질관리인의 자격기준) 법 제27조제4항에 따른 품질관리인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	제6조(품질관리인의 자격기준) -- ----- ----- ---.
1. 먹는샘물등의 제조업 및 수처리제 제조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	1. ----- ----- ----- -----
가. (생략)	가. (현행과 같음)
나. 대학에서 상수도공학, 환경공학, 화학, 미생물학, 위생학 또는 식품학 등 관련분야의 학과·학부를 <u>졸업한 사람이거나</u>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	나. ----- ----- ----- ----- <u>졸업했거나 졸업 예정인 사람</u> <u>또는</u> ----- ----- ---
다. (생략)	다. (현행과 같음)
2. 정수기의 제조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	2. ----- ----- -----
가. (생략)	가. (현행과 같음)

나. 대학에서 상수도공학, 환경공학, 화학, 미생물학, 위생학, 품질관리 또는 품질경영 분야의 학과·학부를 <u>졸업한 사람이거나</u>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다. (생략)	나. ----- ----- ----- ----- <u>졸업했거나 졸업 예정인 사람 또는</u> ----- ----- ----- 다. (현행과 같음)
--	--

풍수해·지진재해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11조(손해평가인의 자격 요건 등) ① 손해평가인이 되려는 사람은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.	제11조(손해평가인의 자격 요건 등) ① ----- ----- ----- -----.
1. ~ 3. (생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
4. 전문대학의 보험 또는 재난 관리 관련 학과를 <u>졸업하였거나</u>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받았을 것 (「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」 제8조에 따라 전문대학 <u>졸업자</u> 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받은 경우와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80학점 이상을 이수한 경우를 <u>포함한다</u>)	4. ----- <u>졸업(졸업 예정인 경우를 포함한다)했거나</u> ----- 것 [----- ----- <u>졸업자(졸업예정자를 포함한 다)</u> ----- ----- ----- <u>포함한다</u>]
5.·6. (생략)	5.·6. (현행과 같음)
②·③ 삭제	
④ (생략)	④ (현행과 같음)

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

일부개정령안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23조(품질관리인) ① (생략)	제23조(품질관리인) ① (현행과 같음)
② 법 제29조에 따른 품질관리인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	② ----- ----- ---
1. (생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대학(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)에서 해양심층수학, 해양학, 수산학, 환경공학, 화학, 미생물학, 위생학 또는 식품학 등 관련 분야의 학과·학부를 <u>졸업한 자이거나</u>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	2.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졸업한 자(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)이거나</u> -----
3. (생략)	3. (현행과 같음)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행정안전부 재난보험과	
연 락 처	(044) 205 - 5355
농림축산식품부 재해보험정책과	
연 락 처	(044) 201 - 1728
보건복지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	
연 락 처	(044) 202 - 2277
환경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	
연 락 처	(044) 201 - 6396
해양수산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	
연 락 처	(044) 200 - 5163